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3. 15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,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: 900,000원 $\Rightarrow$ 1,200,000원
- 보조활동비 : 200,000원 $\Rightarrow$ 300,000원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3. 15. ~ 3. 22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중 “900,000”을 “1,200,000”으로, “200,000”을
“300,0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의원 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의 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<u>900,0</u> <u>00</u> 원을, 보조활동비는 월 <u>200,00</u> <u>0</u> 원을 지급한다.	제3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--- ----- ----- <u>1,200,</u> <u>000</u> ----- <u>300,000</u> -----.